

[별표2]

미래캠퍼스 강사 임용 계약서

연세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0000(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내용)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강사 임용에 따른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소속 :
 2.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 또는 1년)
 3. 강의시간 및 담당과목명 : 개설 교과목 확인서 내용으로 같음
- ※ 개설 교과목 확인서[별지 서식]는 매학기 개설 교과목이 확정된 후 작성·제출함

제2조(임금, 방학중 임금 등) “갑”은 「교직원 등의 보수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1. 구성항목 : 학기중 임금 및 방학중 임금
2. 계산방법
 - 가. 학기중 월 임금 : 주당 강의시간 X 4주 X 시간당 강의료
 ※ 상기 ‘시간당 강의료’는 학기중 강의준비시간 및 평가시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임.
 - 나. 방학중 임금
 - 개학 직전 강의준비 등 사전 업무 임금 : 개학 후 주당 강의시간 X 1주 X 시간당 강의료
 - 방학 직후 성적평가 등 학기 마무리 업무 임금 : 직전 학기 주당 강의시간 X 1주 X 시간당 강의료

※ 해당 학기에 과목이 폐강된 경우 강의료가 지급되지 않음
3. 지급방법 : “을”의 월 임금은 학기 개시월로부터 총 4회 매월 15일에 계산된 금액을 “을”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정규학기 개시월인 3월과 9월에는 그 월의 마지막일에 지급하며, 계절학기 강의를 담당할 경우 여름학기는 7월, 겨울학기는 1월 급여일에 해당 계절학기 강의료 전액을 지급함(개학 직전 강의준비 등 사전 업무에 대한 임금은 매년 1월 또는 7월에, 방학 직후 채점 등 학기 마무리 업무에 대한 임금은 매년 2월 또는 8월에 지급함)

제3조(복무 등 근무조건) ① “을”은 학기별로 주당 9시간 이하의 교수시간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26>

② “을”에게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적용하며, 그 밖의 복무 및 근무조건은 본 대학교의 「미래캠퍼스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4조(면직) 면직에 관한 사항은 「미래캠퍼스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 제17조에 따른다.

제5조(재임용 절차) “을”은 「미래캠퍼스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 제3장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다.(대체강사는 적용되지 않음)

제6조(계약 해지 및 변경) “을”이 내규에서 정한 임용취소 또는 면직사유에 해당된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기타 계약조건)

1. “을”은 본 대학교 제 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래캠퍼스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갑”과 “을”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연세대학교 총장 (인)

을: (주민번호) 800000-1000000
(성명) 000 (인 또는 서명)

[별표2]의 별지

학년도 학기 개설 교과목 확인서

본인은 학년도 학기에 본인이 담당할 교과목의 개설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학년도 학기 개설 교과목

캠퍼스	개설기관	학정번호	과목명	강의시간	강의언어	비고

※ 강의시간 당 강의료에 관련된 사항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강사 강의료 기준에 따름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성 명 :